

[사법농단 ISSUE PAPER ⑭]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31. (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키코상품의 의의	1
나. 키코 사태의 발생	2
다. 소송의 경과	3
라.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4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8
3. 특조위 조사보고서 내용	8
가. 조사내용의 기재	8
나. 특조단의 평가	9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10
5. 향후 과제	11
가. 정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1
나. 검찰	11

1. 사안의 개요

가. 키코 상품의 의미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상품은 수출기업이 만기시 USD 등 기초 외화 자산 대비 원화 환율이 일정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이른바 ‘Knock-out’ 조건, 이하 ‘KO’라고만 함)이 붙은 풋옵션(put option)을 은행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대가로 은행은 위 환율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른바 ‘Knock-in’ 조건, 이하 ‘KI’라고만 함)이 붙은 콜옵션(call option)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교환계약(콜옵션과 풋옵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키코상품으로 인하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환헤지 기능은 KO환율과 행사환율 사이의 좁은 구간에 국한되어 있고, 정작 환헤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KO환율 이하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환헤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키코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환율보다 훨씬 낮은 행사가격으로 은행에게 달러화를 매도하거나 그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무한대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즉, 기업은 키코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미미한 환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엄청난 환손실의 가능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 아니라 환투기적 성격이 강한 파생상품이다.

키코계약을 통해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 이론가는 기업이 취득한 풋옵션 이론가와 평균적으로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업은 환헤지를 하기 위해 풋옵션을 취득하는 대가로 은행에 풋옵션 이론가의 평균 2.5배에 해당하는 콜옵션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키코 상품은 은행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수수료로 취득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금융경제학에서 ‘제로코스트’라는 용어는 교환되는 옵션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키코 상품은 ‘제로코스트’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키코 사태의 발생

수출기업은 외화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환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등 환위험 헤지상품에 가입하여 환손실에 대비한다. 그런데 2007년경 환율이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키코 상품에 가입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키코는 수수료가 없는 ‘제로코스트’상품이어서 다른 환헤지 상품보다 중소기업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은행은 수수료 마진률이 다른 상품보다 훨씬 높은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세미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키코상품을 홍보하였고, 키코상품이 환헤지상품이며 수수료가 없는 상품(제로코스트상품)이라고 기망하여 중소기업에게 키코상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던 것이다.

2008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상품에 가입하였던 우량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이른바 ‘키코 사태’). 외국계 은행과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였는바, 은행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738개사이며, 2010년 6월 기준으로 키코 거래로 인해 3조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키코 거래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받게 된 이자손실 등 2차 피해 규모를 합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키코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위 키코 상품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기 위하여 가처분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¹⁾하였는바, 이하에서 후술한다.

다. 소송의 경과

피해기업들은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일부 피해기업들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였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7340 판결),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70%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2013. 9. 26. 금융기관이 장외과생상품이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갖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바꾸었고, 원심에서 승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거나, 원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기각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시 기	내 용
2008. 10.	피해기업 70개사, 서울중앙지법 옵션효력정지 가처분소송
2008. 11.	피해기업 124개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제기
200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소송 관련, 피해기업 모나미, 디에스엘 시디 승소
20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4개 재판부 키코 1심 판결 선고, 19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0. 12. ~20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 17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1. 5.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시작 (130여개사)
20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 선고, 4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2. 9. ~ 2013.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28개사 청구 일부 인용

1) 키코 피해기업인 S&T 모터스가 2008. 8.경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 총 220여개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 1개사 청구 일부 인용
2013. 9. 26.	대법원 키코 사건 판결 선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2014. 6.	대법원 키코 사건 13건 심리불속행 판결

	총배정	소취하	진행	선고	선고결과	항소	항소포기	기타
1심	251	10	0	241	원고패 195 원고일부인용 46	160	81	2008.11. 1심 시작
2심	173	17	3	153	원고패 101 원고일부인용 51	99	53 (원고 일부 인용8)	2010.12. 항소심 시작
3심	99	3	14	82	상고기각 50 (원고패 35, 원고일부인용15) 심리불속행기각 21 (원고패18, 원고일부인용3)	-	-	2011.7. 상고 시작
2심 (파기)	11	0	4	7	원고패소 5 원고일부인용 2			

라.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키코계약은 정형성을 띠고 있어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의 일부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거쳤으므로, 키코계약을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에 해석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조건 중 극히 일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약관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은행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의 구조와 조건을 설정하여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

기 때문에, 소비자는 은행이 만들어놓은 조건에 구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다.

또한 키코 상품은 교환하는 옵션의 평균 이론가 차이가 2.5배에 달할 정도로 은행이 훨씬 많은 이익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계약의 내용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고려할 때, 키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풋옵션과 콜옵션의 이론가 차이가 평균적으로 수배 에서 수십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당시 기업과 은행의 기대이익이 동일하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하였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옵션의 이론가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키코는 제로코스트 상품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전문기관인 시중 은행도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였던 은행이 ‘제로코스트’의 의미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은행측에 유리한 판단을 하기 위한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 인도판 키코

- 인도 중앙조사국(CBI)이 전면 수사에 착수하여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 공모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
- 인도 준비은행(RBI), 파생상품판매 19개 은행에 최고 벌금 부과
 - 키코(KIKO)와 인도의 ‘탄(TARN)’은 동일한 계약구조와 동일한 판매과정, 동일한 계약주체, 동일한 판매시기와 판매주도은행, 계약체결 후 동일한 피해상황 등 판박이 금융사기 사건
 - 국내 피해기업과 인도 피해기업들이 제기해온 ▲은행의 의도적 공모 ▲국부 유출피해 ▲기대이익의 불공정성(옵션 프리미엄 차익실현) ▲관련기관의 묵인 내지 방관 등 공통적 상황

- 그러나,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조치 및 솔루션은 인도와 상반된 결과(한국의 금융감독원은 키코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었고, 오히려 은행을 보호하기에 급급함)

■ 이탈리아판 파생상품 사기

- 이탈리아 검찰은 4개 은행이 밀라노시에게 파생상품 계약의 옵션 프리미엄 차액(마이너스 시장가치)을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함
- 밀라노법원은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밀라노시를 상대로 체결한 스왑상품은 무효이며 은행은 밀라노시에게 65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은 파생상품 계약에 옵션 프리미엄 차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행이 알려주지 않은 문제로 지방정부와 은행간 파생상품 계약에 대해 채무금 지급 중단 결정
- 도이치은행 등 4개은행은 밀라노시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를 경감시켜주는 상품이라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파생상품 계약들을 추천하여 이를 밀라노시와 체결

■ 독일판 파생상품 부실판매

- 이자율 스왑거래 상품이나 키코와 유사 ▲쌍방 기대이익 교환 구조 ▲옵션의 프리미엄의 차이가 공개되지 않음 ▲계약체결 당시부터 기업에게 마이너스의 시장가치 ▲은행손실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 기업손실은 무한대
- 도이치은행이 위생품 제조 중소기업 '일레 파피에르'에 이자율 스왑 상품 판매. 일레 파피에르 2007년 손해배상소송 제기, 1심과 2심에서는 기업이 패소, 연방대법원에서 기업이 승소
- 독일 연방대법원은 '파생상품의 경우 설명의 정도는 고객이 손실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은행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은행이 손실금

액 100%를 책임지도록 판결함

■ 미국 SEC 및 CFTC 회의기록

- ‘뱅크스 트러스트’는 포장지 제조기업 ‘깁슨’에게 이자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상품이라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파생상품 계약을 추천하여 이를 체결(이 파생상품 계약들도 처음부터 옵션 프리미엄이 차이가 있었으나, 은행은 이를 밝히지 않음)
- 미국 SEC는 “‘뱅크스 트러스트’가 계약체결 당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구조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사기적 거래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1,0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문가들은 "키코 상품이 미국에서 판매됐더라면 판매은행들은 사기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밝힘

■ 일본판 키코

- 일본에서도 1만900개 기업이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하여 손실을 입음. 키코와 마찬가지로 은행측으로부터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강요한 경우도 있음.
- 기업과 은행 간 분쟁도 늘어나자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은행이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하도록 중재, 은행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이 입은 손실금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부담함(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자이’ 보도)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키코통화옵션계약 체결에 적절한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 및 키코 상품이 원고들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구체적인 손익구조 및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키코 상품의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기업은 은행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키코 상품이 선물환보다 유리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은행이 고객의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설명하였어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

이 고객에게 옵션의 이론가 차이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키코 계약에 관하여 다수의 법적 쟁점이 문제되었고, 하급심에서는 재판부마다 그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가처분사건과 일부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어떠한 소수의견도 없이 실질적으로 피해기업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2018. 5. 25. 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문건 중, 키코 사건과 관련된 것은 ‘(151119)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전략 [82]’이다. 이 문건에는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키코 사건을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철저하게 증거와 법률에 기초하여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할 법관들이, 키코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경제발전을 헌법과 법률보다 우선하여 판결을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법관에게 그렇게 판단할 ‘권한과 재량’이 있다고 착각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 조사보고서 173쪽은 위 [82] 문건에 대하여 “민정수석의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시킬 합당한 명분과 계기 또는 실효적 압박카드가 없으면 부정적 입장 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과 계기로는 법원과 법무부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기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대안으로는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설치하는 안, 대통령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실제 검증하기 위한 한시법 제정을 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압박카드로는 ‘청와대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여기에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고 하면서, 위 「압박카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서 ‘키코 사건’을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서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기재하고 있다.

나. 특조단의 평가

앞서 다른 이슈페이퍼에서 본 것처럼, 특조단은 [82]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고 하면서(조사보고서 173쪽), “2015. 11. 19.의 임종헌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 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76, 177쪽).

4. 사법농단의 실태와 평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은 키코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의 무효, 취소 여부,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관한 설명의무의 기준과 충족여부, 적합성 원칙의 기준과 충족 여부 등 수많은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였던 사건이다.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도 사건의 당사자 외에도 법학자들의 견해도 치열하게 나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게다가 키코 상품과 유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다도 키코상품의 판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신중하여야 했다. 또한,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일부 인용되었던 만큼, 법관조차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 하나의 소수의견, 심지어 보충의견도 없이 결론을 도출²⁾하였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법리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은행의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없이 일치된 견해로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스스로 이와 같은 판결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사법부의 협조 사례라 평가하였는바, 이는 최고 법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특히 키코 관련 사건에 있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입장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키코 관련 가치분 사건의 관여법관으로서, 키코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조항들(①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프리미엄)를 현금이나 다른 옵션의 매도로써 지급하여 제로코스트(zero cost)를 실현하는 구조, ② 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적 가격(이하 '이론가'라고 한다)을 기업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에 비해 크게 설계하여 그 차액 상당을 은행이 마진으로 수취하는 구조, ③ 계약기간 동안 주로 1개월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는 수 개의 풋옵션과 콜옵션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구조, ④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은행의 손실범위는 일정액으로 제한되는 반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의 손실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구조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은행이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93). 그러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서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변경하였고, 어떠한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 2. 24.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였다.

5. 향후 과제

특조단의 조사 결과 그 자체만으로도, 키코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독립성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

가. 정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은 2018. 5. 31. 키코 공대위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키코 공대위는 키코 피해현황 실태를 재조사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및 전면 재조사는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던 5개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³⁾ 금융당국이 키코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민관 합동조사단 결성 및 전면 재조사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처음 키코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였던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 및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법원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나. 검찰

키코 공대위와 피해기업 일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코상품을 판매하였던 금융기관 및 판매담당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재고소(발)하였다. 애초에

3)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3381819>(윤석현 “키코, 전면재조사 아닌 법원서 안다룬 부분 재조사”, 뉴스 1, 김현 기자)

키코 사건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되었으나, 수사담당 검사가 갑자기 교체되고, 중요한 수사자료가 누락된 사실이 추후에 밝혀졌으며,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은행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키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하여 키코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